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9
------------	------

2020.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0. 2. 5. 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 (2020. 2. 12. 회부)

## 2.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릉지 등 지형적 특성을 가진 저층주거지내 소규모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중정형 등 다양한 평면 유도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의 완화가 필요함.
- 또한,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동간격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35조제4항제1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사항 신설

-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문을 정비 함(안 제7조제1항제1호다목2), 제26조제1항제2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강대호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 개정안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동간격 기준 완화 (안 제35조제4항제1호)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 등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해 건립되는 공동주택 중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인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 ‘해당 건축위원회1)’의 심의를 거쳐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민영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중규모로 건립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 자치구 건축위원회

법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p> <p>③~④ (생략)</p>	<p>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p> <p>①~② (생략)</p> <p>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1.~2. (생략)</p> <p>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b>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b></p> <p>나.~마. (생략)</p> <p>3. _____.</p> <p>④~⑦ (생략)</p>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 <p>①~③ (생략)</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 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p> <p>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b>0.8배 이상</b></p> <p><b>&lt;단서 신설&gt;</b></p> <p>2.~5. (생략)</p>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p> <p>_____단, 「<u>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u>」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0.5배 이상</b></p> <p>2.~5. (생략)</p>

○ 참고로 2019년 12월 19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중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동간격을 법령상 최저치로 완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9.) 발췌〉

- (건축규제 완화) 인동간격 관련 서울시 조례 규제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하여\* 중정(中庭)형 건축 등 곤란 → 조례를 법령 하한수준으로 완화
- \* (법령)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간 거리(인동간격)는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 (조례)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8배 이상 → 사업구역이 좁아 마주보는 배치 불가

- 현행 건축법령<sup>2)</sup>에서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H)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의 인동간격을 확보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sup>3)</sup>.
-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해당 인동간격(D)을 법정 최저치(0.5H 이상)보다 상향된 0.8H 이상으로 규정해 왔는데, 이는 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시행령 상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 연혁〉 (시행령 제86조)

시기	~1999.5.8	1999.5.9~	2006.1.18~	2009.7.16~
인동간격 (D)	≥1.25H	≥0.8H	≥1H	≥0.5H

(H: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 참고로 건축법령상 ‘중정형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본문 중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채광창 인동간격의 완화는 채광·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주로 정비사

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3) 2009.11.11. 신설

업이 검토되고 있고, 중정형 배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7층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 일정 수준의 건축규모를 계획하게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제한의 일정범위에서 완화가<sup>4)</sup> 가능하게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를 함께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위원회 심의사항 등 (안 제7조제1항 등),

- 안 제7조제1항제1호다목2)는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례로 시(市) 위원회 심의사항<sup>5)</sup>을 정하는 항목으로서, 시행령 제5조의5 조문이 일부삭제·신설('14~'16년)된 이후 이를 인용한 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의 내용이 해석상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바로잡으려는 것임.

---

4) 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위 사항이 건축규제 완화 특례적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례별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5)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sup>6)</sup>”은, 같은 항다목에서 이미 명시한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p><b>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b></p> <p>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p> <p>1.~3. (생략)</p> <p>4. <b>다중이용 건축물</b>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p> <p>5. 삭제 &lt;2016. 1. 19.&gt;</p> <p>6. <b>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b>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7.~8. (생략)</p>	<p><b>제7조(기능 및 절차 등)</b></p> <p>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나. (생략)</p> <p>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b>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b>로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b>건축물</b>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b>제7조(기능 및 절차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 또는 시가</u>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6)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공개 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19.7.18 이 조례 개정(서울특별시 조례 제7265호) 시 반영되지 못한 인용조항을 정비<sup>7)</sup>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

7) 제26조제1항제2호 내용 중 '제2항제7호' → '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3호 내용 중 '제2항제7호' → '제2항제6호'  
 제26조제4항제2호 내용 중 '제2항제9호' → '제6항제3호'

## 【붙임 1】 관련 규정

### ○ 건축법

####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 건축법 시행령

####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8.7.19>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 등을 점검하는 경우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 【붙임 2】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20. 2월말 기준)

### ○ 추진 개요

계	준공	착공	사업시행 계획인가	건축심의	조합설립 인가	비고 (의견 수렴중)
111	1	9	7	13	27	54

- 준공(1) 및 의견 수렴중(54)인 곳을 제외하고 56개소에서 추진 중

### ○ 세부현황

연번	자치구	구역명	대표지번	대지면적 (㎡)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시행단계	비고
1	광진 (1)	한양연립	구의동 592-39	5,814	45	149	지정개발자 지정 (‘19.10.02)	-
2	중랑 (4)	대명삼보 연립	중화동 1-1	7,403	87	179	관리처분계획인가 (‘19.07.11)	-
3		면목부림 연립	면목동 44-6	693.6	20	28	건축심의 (‘19.05.30)	LH공동
4		면목동 우성주택	면목동 173-2	1,456	22	42	사업시행계획인가 (‘15.10.20)	이주 (진행중)
5		세광하니 타운	중화동 296-44	5,547	210	223	건축심의 (‘18.07.13)	-
6		장위 15-1	장위동 258-2	9,315	97	178	조합설립인가 (‘19.11.15.)	-
7	성북 (3)	장위 11-2	장위동 68-833	6,685	60	167	조합설립인가 (‘19.08.19)	-
8		정릉동 218-1	정릉동 218-1	6,471	84	미정	조합설립인가 (‘20.1.22)	-
9	강북 (1)	번동 429 일대	번동 429-114	4,178	36	108	조합설립인가 (‘19.09.20)	-
10	도봉 (1)	청호빌라	방학동68 7-41	1,828	31	50	건축심의 (‘19.03.14)	-
11	마포 (1)	합정동 447일대	합정동 447-2	5,778	103	205	조합설립인가 (‘19.10.21)	-
12	양천 (5)	신월동 48-2 일대	신월동 48-2	2,821	100	미정	조합설립인가 (‘19.11.25)	-
13		목동2 LH참여형	목동 756-1	3,811	129	미정	조합설립인가 (‘19.08.22)	-
14		삼진연립	신월동 487-9	1,419	24	미정	조합설립인가 (‘19.05.28)	-
15		목동 LH참여형	목동 557	2,918	46	85	조합설립인가 (‘17.12.15)	LH공동
16	양천 (5)	덕화연립	신월동 118-46	2,354	45	미정	조합설립인가 (‘20.1.30)	-

연번	자치구	구역명	대표지번	대지면적 ( $m^2$ )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시행단계	비고
17	강서 (4)	발산미주	내발산동 655-5	649	8	29	착 공 (‘19.08.30)	-
18		삼안1	등촌동 643-56	2,357	49	67	착 공 (‘18.10.4)	이주/철거
19		삼안2	등촌동 653-8	1,611	36	53	착 공 (‘18.10.4)	이주/철거
20		동원주택	내발산동 712-5	2,302	78	90	건축심의 (‘20.1.4)	-
21	구로 (2)	철성 아파트	구로동 685-280	3,076	40	98	착 공 (‘18.08.31)	이주/철거 입주자모집
22		대성주택	고척동 97	1,590	27	56	조합설립인가 (‘19.12.31)	-
23	금천 (2)	동진빌라	독산동 234-72	2,679	30	63	건축심의 (‘18.12.31)	-
24		중앙빌라	시흥동 973-6	1,246	21	34	조합설립인가 (‘19.05.10)	-
25	영등포 (3)	영등포동	영등포2가 439	3,356	25	156	사업시행계획인가 (‘19.11.01)	-
26		유성빌라	양평동6가 84	3,139	54	99	조합설립인가 (‘19.10.24)	-
27		보령,금강 연립	대림동 786	1,801	50	68	조합설립인가 (‘17.08.07)	-
28	관악 (1)	관악호신 연립	봉천동15 35-10	3,153	48	82	건축심의 (‘18.12.03)	SH공동
29	서초 (5)	서초동 남양연립	서초동 1611-1	2,302	36	55	착 공 (‘19.07.19)	이주/철거
30		한국상록 연립	방배동 853-5	2,104	30	47	착 공 (‘19.02.13)	이주/철거
31		서초동 낙원청광	서초동 1451-67	2,847	32	67	관리처분계획인가 (‘19.04.08)	이주
32		한신빌라	양재동 18-12	4,379	84	112	건축심의 (‘18.01.17)	-
33		방배동 대진빌라	방배동 911-3	1,597	24	미정	조합설립인가 (‘16.05.09)	-
34	강남 (5)	영동한양 빌라	청담동 34	2,250	27	40	건축심의 (‘18.11.28)	-
35		세광연립	논현동 150-4	1,921	30	40	건축심의 (‘19.02.19)	-
36		현대타운	대치동10 19-3	1,560	29	43	사업시행계획인가 (‘19.08.02)	이주
37		삼성동 98	삼성동 98	5,848	77	125	조합설립인가 (‘19.12.09)	-
38		역삼목화 연립	역삼동 607-9	762	24	30	조합설립인가 (‘19.04.04)	SH공동

연번	자치구	구역명	대표지번	대지면적 (㎡)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시행단계	비고
39	송파 (8)	화인아트	마천동 26-1	1,189	34	48	착 공 (‘18.10.2)	이주/철거
40		장안빌라	방이동 138-4	1,092	30	42	사업시행계획인가 (‘19.09.05)	-
41		금호빌라	방이동 152-7	1,040	33	48	건축심의 (‘19.12.19)	-
42		행진빌라	오금동 143	2,205	73	90	조합설립인가 (‘19.12.31)	-
43		호수빌라	송파동 42-3	2,883	45	70	조합설립인가 (‘19.11.06)	-
44		일신빌라	오금동 147	2,376	70	96	조합설립인가 (‘19.10.29)	-
45		삼익빌라	방이동 152-26	1,391	54	미정	조합설립인가 (‘19.09.03)	-
46		송파동 101일대	송파동 101-5	4,501	90	미정	조합설립인가 (‘19.02.18)	-
47	강동 (11)	천호동 동도연립	천호동 320	3,333	66	96	준 공 (‘17.11.22)	-
48		삼천리 연립	성내동 443-30	4,056	45	89	착 공 (‘19.04.29)	이주/철거 입주자모집
49		코끼리 연립	성내동 123-6	2,606	54	71	착 공 (‘19.09.19)	이주/철거
50		벽산빌라	상일동 152	5,224	54	100	사업시행계획인가 (‘19.07.05)	이주/철거 (진행중)
51		유정빌라	길동 375-2	1,293	39	40	건축심의 (‘17.12.13)	-
52		동성타운	길동 353-5	2,879	54	50	건축심의 (‘18.02.21)	-
53		삼원렉스 빌라	명일동 336-16	738	24	미정	조합설립인가 (‘19.12.24)	-
54		명일동 현대하이츠	명일동 263-2	1,043	24	미정	조합설립인가 (‘19.12.13)	-
55		유원연립 빌라	성내동 465-10	1,571	30	미정	조합설립인가 (‘19.12.06)	-
56		대명 아파트	암사동 447-8	3,238	80	미정	조합설립인가 (‘18.02.27)	-
57		천호동 국도연립	천호동 321-18	2,704	44	미정	조합설립인가 (‘15.12.23)	-

※ 주민의견 수렴중(54)

- 종로 1, 용산 3, 광진 1, 성동 1, 동대문 1, 성북 14, 도봉 5, 노원 2, 마포 4, 서대문 1, 금천 6, 영등포 2, 강남 8, 송파 3, 강동 2